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완성요구에 대한 청원』 의 건 서(안)

1. 처리기관 : 구미시장

2. 관 련 법

가. 「지방자치법」 제76조

나.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2항

3. 의견내용

구미시 고아읍 봉한1리 698-1번지 이태봉외 88명으로부터 접수된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완성 요구」 청원의 건은,

재산정 용역조사 결과 8대 감차로 산정되었으나,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22조 “수송력 공급
계획의 변경사유” 요건 미비로 “**변경 승인 불가**”로 통보 받았으므로,
2차년도 감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감차 등 대안을 중앙부처에 건의
토록 하고,

제3차년도(2015년) 택시총량제 산정시, 대규모 인구유입과 택시 수
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 향후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청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여,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2항에 의거 구미시장에 이송 처리할 것을 의결한다.

다 음

- 택시 총량제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2차년도에 감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감차 등 대안을 중앙부처에 건의 하도록 하며, 제3차년도(2015년) 택시 총량제 산정시에는 대규모 인구유입과 택시 수요의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청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2. 12.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